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Small and 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y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Small and 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y

※ 본 자료는 연초 사업계획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내

06

PART.

1

1. 안산시 주요사업

07

- 한양대애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08
-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추진 10
- 안산화폐 다운 발행 12

PART.

2

2. 자금지원

13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14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5
-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6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7
-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18
-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19
-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 사업(IoT) 20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1

PART.

3

3. 창업 및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

23

-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24
-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25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26
- 시제품 제작 지원 27
-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28
- 기술닥터 사업 29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30
- 안산 IT · SW기업 성장 지원 31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2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33
- 청정공정 확산 사업 34
-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 35
-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사업 36

PART.

4

4. 첨단 제조 및 로봇기술 혁신 지원

37

- 스마트 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 38
-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39
-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40
- 미래혁신기술 제품화 지원 41
-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 운영 42

PART.

5

5. 국내 외 마케팅 지원**43**

- 해외 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44
-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5
- 해외지사화 사업 46
-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47
- 안산e-스토어 운영 48
-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사업 49
-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경기TP) 50
-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51

PART.

6

6. 기업환경 개선 지원**53**

- 기업SOS넷 운영(기업애로 해소) 54
-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55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56
-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 57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58
-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59
-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60
- '환경경영포인트제' 추진 61

PART.

7

7. 기업민원 처리**63**

- ONE-STOP 공장설립(등록) 민원 처리 64
- 건축 인 ·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65
-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및 민원 처리 66
- 공장등록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 67

PART.

8

8. 일자리 지원**69**

- 안산시일자리센터 운영 70
- 대규모 채용박람회(안산스마트허브/안산919취업광장) 운영 71
-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72
-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운영 73

PART.

9

9. 기타 정보**75**

- 도로 중앙선 절선 절차 안내 76
- 중소기업 확인 요령 77
-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요령 78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79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82
-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89
-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90
-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연락처 91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내

➔ 조 직 : 3 과 12 팀



➔ 주요업종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산 업 진 흥 과 (481-2102)	· 반월 · 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추진 · 산업단지 AX산단 실증사업 지원 · 로봇산업 육성·지원 · 산업 디지털전환(DX) 지원 ·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 강소기업 육성 지원 ·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
기 업 지 원 과 (481-2281)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 · 기업SOS시스템 운영 등 기업애로 해소 · 건축인 ·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공장설립 및 등록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 산단 내 제설 및 수해 대책
산 단 환 경 과 (481-2896)	· 산단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 · 점검 · 환경오염 배출업소 교육 및 사전환경성 검토 컨설팅운영 ·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및 악취실태조사 추진 · 산단 내 폐기물 · 토양 · 비산먼지 · 소음진동 관리 ·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및 청정공장 확산사업

PART

1

사업개요

-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추진
- 안산화폐 다운 발행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요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한양대학교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면 적 : 184,130㎡ (1단계 78,605㎡ / 2단계 105,525㎡)
- 사 업 비 : 552억원(국95.2 도10 시20 LH426.8)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양대
- 주요내용 :
 -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주·창업지원·주거·문화시설 등 복합 개발을 통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혁신기업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One-Stop Solution 지원

창업부터 본격 기업경영까지 One-Stop Solution 지원

ERICA 산업협력
인프라와
혁신역량 활용

ERICA 정부지원
산업협력 교육연구
프로그램 연계

ERICA 학생 교수
창업 및 Post BI
기업지원 강화

청년친화형
배움터/일터/삶터
결합

ERICA 보유
생활편의 인프라
공동활용

주요업종

- IT, 첨단부품 소재 기업,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 업종배치계획(안)



유치업종

구 분	업 종	비 고
첨단제조산업(A)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전기장비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첨단연구산업(B)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관련 사진



위치도



조감도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사업 추진단 (☎ 031-400-4467)

안산 감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추진



개요

- 지 정 : 2019. 8. 7.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1.73km²)



지구별 기능

구 분			주요기능
기술핵심기관	R&D 거점지구	한양대학교 ERICA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배후공간	사업화 촉진지구	경기테크노파크	지역혁신 사업/배후 산업단지 거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인력양성
		한국전기연구원	전력 IT, 전기기기 등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평가, 인허가 관련 시험/인증지원
	사업화 거점지구	시화MTV 산업단지	기술이전 기업 입주, 창업공간 활용

- 특화분야 :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부품 소재
- 주요내용 :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기업에 이전하여 'ICT 융복합 부품소재'(특화 분야) 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
- 주요사업
 - (기술 발굴 및 연계) 특화분야 중심 양방향 기술 발굴 및 연계
 -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부품소재 중심의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R&BD)과제 지원
 - (강소형 기술창업) 기술 창업 지원, 투자연계 등 창업 생태계 구축
 -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특화분야 기업 육성, 네트워크 운영 등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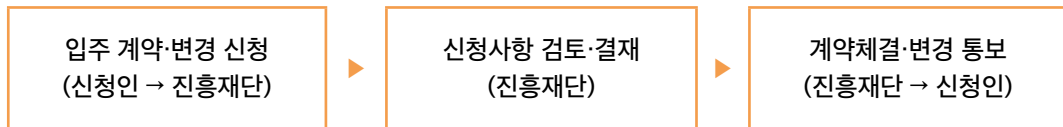
➡ 연구개발특구 입주혜택

- 특구 육성사업 참여(각종 R&BD 관련 사업비 지원)
- 입주기관이 특구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 기업으로 승인·지정받은 경우 아래의 세제혜택 지원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국세)	: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지방세)	: 50%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구소기업 요건	첨단기술기업 요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보유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이상 ▶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

➡ 입주 계약(변경) 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3589)
 한양대에리카 강소특구지원팀 (☎ 031-400-498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역성팀 (☎ 031-400-4874)

안산화폐 다운 발행



개요

- 최초 발행일 : 2019. 04. 01.
- 발행방식
 - 일반발행 : 인센티브 6 ~ 10%, 특별 캐시백 5~10%
 - 정책발행 :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 충전 한도 : 월 30~60만원(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가맹점 수 : 21,878개소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3,034	2,018	2,594	2,549	1,722	1,587	2,564
카드	12,433	1,715	2,430	2,415	1,722	1,587	2,564
지류	601	303	164	134	-	-	-

2026년 발행목표

- 발행목표 : 2,648억원
- 인센티브 : 평상시 10%, 명절 5% 캐시백 ※예산 소진 시까지
- 충전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사업비 : 268억원(국비 내시에 따라 변동가능)

기대효과

- 안산화폐 다운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안정적인 안산화폐 다운 발행으로 안산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 촉진
- 시승격 40주년 기념 명절 특별 캐시백을 발행하여 안산시민의 소속감 향상

문의처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경제팀 (☎ 031-481-2921)

PART

2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 사업(IoT)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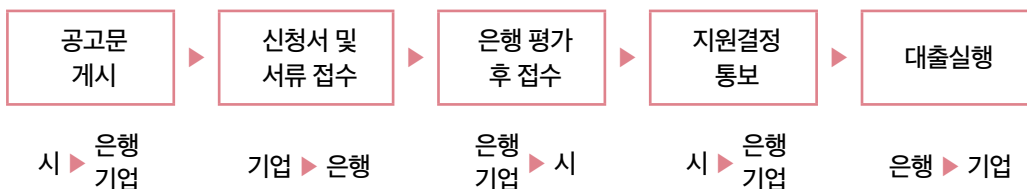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가능)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500억원
- 지원방법
 -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이자차액(1.5 ~ 1.8%) 보전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 1·2년(일시상환), 3·4년(1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은행별 기준금리
- 융자취급 금융기관 : 협약 금융기관 7개 (수도권 내 지점에 한함)
 - ※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아이엠뱅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84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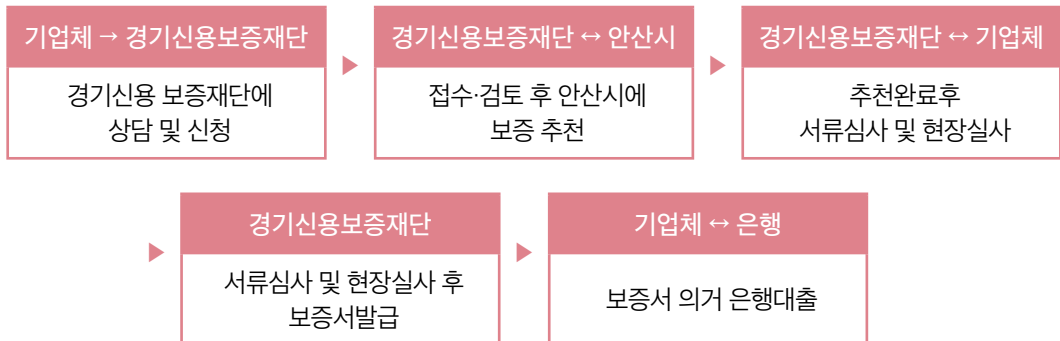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36억원
- 지원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841)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 031-482-8401)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또는 1년 수출실적 3천만불 미만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2천만원
- 지원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지원
- 지원내용 : 아래의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금액 지원

➤ 지원절차

구분	한도	보상내용	지원대상	계약기간
단체보험	5만불	안산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D 30백만 이하 중소기업	1년 (대금 결제기간 1년 내의 수출 계약 건)
단기수출보험	수입자별 한도 책정	수출물품 선적 후,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출입자 간 거래별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 수출자 앞 손실 보전	신용등급 F급 이상	선적 시마다 보험관계 성립
수출신용보증	수출자별 한도 책정	수출자의 은행 대출에 대공사의 보증 (자체담보 제공없이 무역금융 대출 가능)	수출자 신용평가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건마다 보증관계 별도 성립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841)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서부지사 (☎ 031-499-5592)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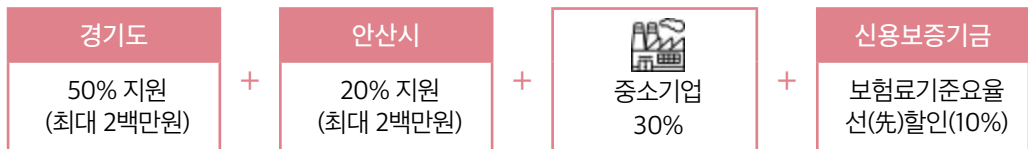
-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등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당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안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 ※ 가입제한업종 : 담배·주류·귀금속 도매업, 숙박업, 음식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보험료의 20% 지원(업체별 최대 2백만원)



- 접 수 처 : 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841)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공고일 이전 수출신고 건 포함)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유통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 간접 수출기업 제외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규모 : 15개 사 내외(1개사 300만원 한도, 70% 이내)

● 지원내용

- 2026년 수출 신고된 건에 대한 국·내외 운임비용 사후 지원
 -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운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비용 포함
 - 육로, 해상, 항공 모두 지원
- 총 소요 비용의 70% 지원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 | |
|---------------------------|-----------------|
| ①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 ②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 ③ 관세 및 부가세 | ④ 창고 보관비용 |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093)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



개 요

- 기 간 : 2026. 1. ~ 12.
- 융자 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 금리 : 대출금리 변동(안산시에서 대출이자 보전)
- 융자 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 은행 : 농협중앙회·기업은행·하나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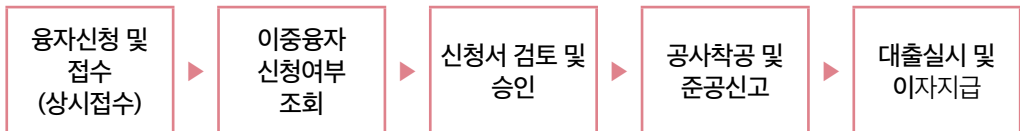
지원대상

- 융자지원대상
 - ▶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설치·변경하는 경우
 - 악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 TMS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VOC 제거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TMS설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등
- 융자제외대상
 -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 ▶ 다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지원내용

- 융자금 10억원 이내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보조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산단 내(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산단 외(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문의처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031-481-2613)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031-481-3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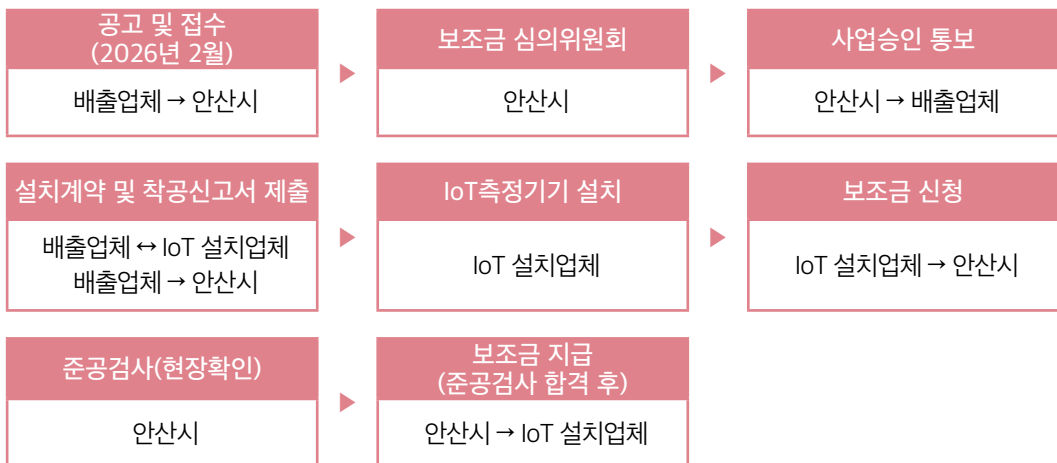
소규모 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IoT)



개요

- **사업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 추진
- **사업기간** : 2026. 2. ~ 12.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 지원
- **사업비** : 840,000천원(국비 4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40% 별도)
 ☞ 국비 560,000천원, 도비 70,000천원, 시비 210,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 **지원조건**
 - 해당 지원시설 3년 이상 운영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자료 전송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031-481-397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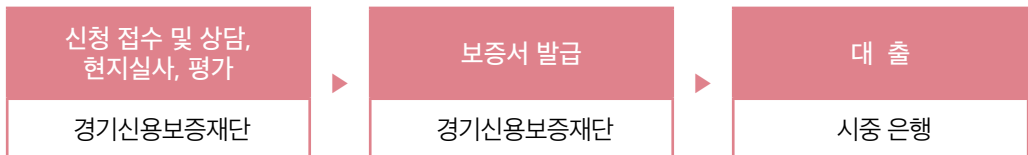
개 요

- 기 간 : 2026. 1. ~ 12.(자금 소진 시 까지)
- 출 연 금 : 10억원
- 지원규모 : 100억원(출연금의 10배 보증지원)
- 보증한도 : 창업 및 경영환경개선 자금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아래의 자금별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창업지원자금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2개월 미만
 - 경영개선자금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2개월 이상

지원절차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구 분		일 반 보 증	특 례 보 증
보증한도	대 표 의 신 용 도	소상공인평가모형 또는 CB(나이스) 등급 이용	- 20백만원이하 : 한도사정 생략 - 20백만원초과 : 소상공인 평가
보증가능 신용등급	업 체 종합신용도	B등급이상	등급평가 생략
보증료율	-	신용등급별 차등 (평균1.2%)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 1%

☞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481-2829)

☞ 관련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 031-690-4303)

PART

3

창업 및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

-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 기술닥터 사업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안산 IT · SW기업 성장 지원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 청정공정 확산 사업
-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
-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사업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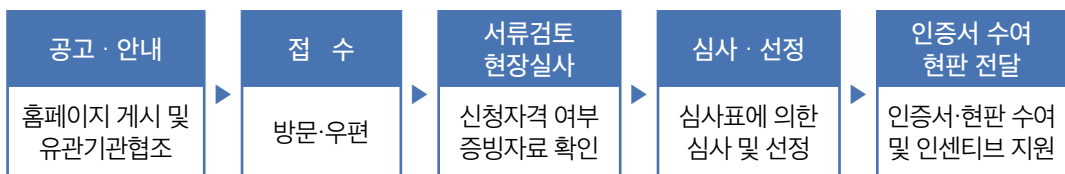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 신청조건
 - ▶ 제조업, 지식기반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안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300인 미만 기업
 -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아래와 같으며,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증가율 5%이상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2명이상
- 선정시기 : 매년 10월경 모집공고 후 현장실사 및 심사

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5점 가점 및 0.25% 추가금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 5점 가점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3점 가점
- 안산시 상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10% 이내)

지원절차



홍보사진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문의처

노동일자리와 일자리지원팀 (☎ 031-481-3279)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여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39세이하 청년
- **사업규모** : 4개소 60실
- **운영기관** : 안산시 청년정책관, (재)경기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창업공간(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시제품촬영 등) 및 회의실 등 부대시설 제공
-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

지원절차

- **입주신청** : 청년큐브 홈페이지 (<https://www.youthcube.net>)



청년큐브 현황 : 총 4개소 60실

캠프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	월피캠프
전경				
위치	사동 한양타운 4층 (한양대학로 60)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3층 (광덕산안길 20)	초지동 신명트윈타워 5층 (원포공원1로 59)	상록구 월피동 509-15번지 (광덕산3로 51)
개소	2016.2월 개소	2016.2월 개소	2017.12월 개소	2025. 9. 23.개소
규모	314㎡(약95평)	816㎡(약247평)	2,013㎡(약610평)	563.65㎡(약167평)
구성	창업실 10실 세미나실 공용휴게실(로비)	창업실 20실 세미나실 다목적실(연습실) 다용도실 공용휴게실(로비)	창업실 24실 회의실 3실, 세미나실, 전시장 다목적실(공연장) 공용휴게실(로비)	창업실 6실, 공유업무공간, 운영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문의처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팀 (☎ 031-481-3984)
안산시 청년큐브 (☎ 031-487-9970/9972)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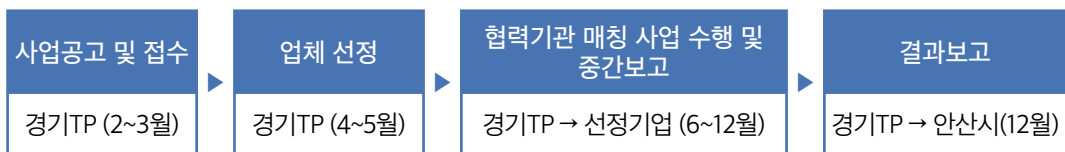
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IP) 신청건에 대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규모** : 총 12건, 기업당 2천만원 이내(지원분야에 따라 변동 可)
- **주관** : 안산시, 특허청,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원내용

국내 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해외 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 (개별국)	유럽	5,700천원 이내	
		일본	4,000천원 이내	
		미국	3,900천원 이내	
		중국	3,5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특 허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9,000천원 이내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국내맞춤 특허전략		9,000천원 이내	국내 시장 타겟한 특허에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 략 수립
디 자 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9,000천원 이내	국내 시장 타겟한 디자인에 맞춤형 조사·분석 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 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UX·UI)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브 랜 드	신규 브랜드		14,000천원 이내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 발 및 리뉴얼
	리뉴얼 브랜드		6,000천원 이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무료)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IP현안에 대하여 상담·컨설팅(지재산 일반, 정보검 색 및 전자출원, 브랜드, 디자인, 기술사업화분쟁·거래, IP교육, 등)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626)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3)

시제품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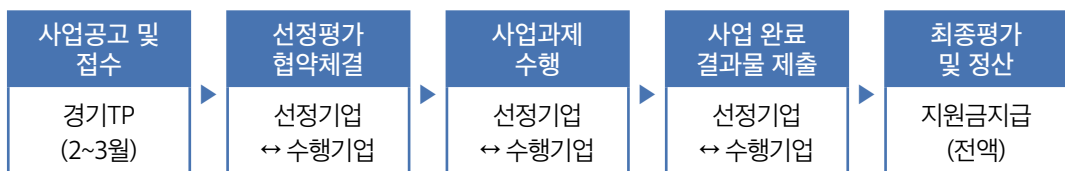


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총 3개사
- **지원금액** : 500만원/기업당 ※기업자부담 : 지원금의 10%, VAT별도(기업부담)
-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분야를 선택
 - 선택한 지원분야 수행기관을 기업이 직접 섭외하여 사업비 범위 내 과제 추진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기업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제품디자인 설계 (Design Mock-up 포함) ▶ 시제품제작 (위킹목업) ▶ 금형제작	3개사 (5백만원/기업)
예시>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626)
경기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팀 (☎ 031-500-3035)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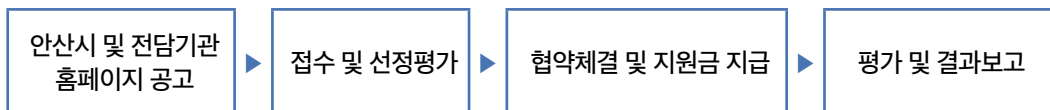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연례반복)
- 사업비 : 420,000천원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 사업목적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AI 로봇 및 미래차산업 관련 분야
- 지원규모 : 11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안산시 지원금 32백만원 내외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지원과제
 -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과제, 제품성능 및 공정개선 지원
 - 기술개발로 사업화 가능 과제 지원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팀 (☎ 031-500-3099)

기술닥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연례반복)
- 사업비 : 782,650천원 (도 234,795 시 547,855)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 사업목적 :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맞춤형 1:1로 해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단계	프로그램	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2,900천원 이내	없음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20%이내
3단계	상용화지원	신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및 고용 창출 유도	5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20%이내
단계별 검증지원	기술검증	현장애로기술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	5,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20%이내
	사업화검증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 031-500-3112)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총 4년)
- **사업비** : 50억원(4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 우수 기업
- **전담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융합기술연구소)
- **수행기관** : 안산사이언스밸리(ASV)기관
- **사업내용** :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기관 간 협업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술**
① 미래차 ② 로봇 ③ 정보통신기술(ICT) ④ 바이오·의료
- **지원유형**

시장창출	2단계 사업 참여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여 추가적인 R&D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극대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제조혁신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 상용화 연구 집중 지원
ASV협동 기술개발	우수 연구 인프라와 인력을 보유한 2개 이상의 ASV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인증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신제품 및 신기술의 실증(Scale-up) R&D지원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35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행정지원팀 (☎ 031-8040-6052)

안산 IT · SW기업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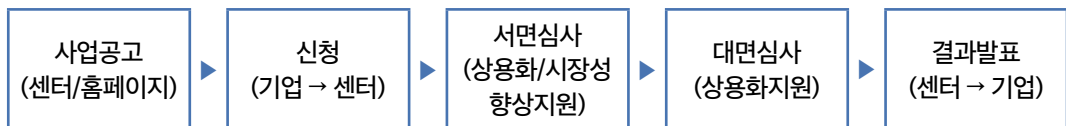
개 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연례반복)
- 사업비 : 180,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IT·SW 중소기업
- 사업목적 : 관내 IT·SW기업 대상 분야별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 IT·SW상용화 지원(최대 20백만원/건)
 - IT·SW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R&D), SW개발(업그레이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제품디자인, 금형설계 및 제작, 회로 및 기구 설계·제작 지원
- IT·SW판로개척 지원(최대 5백만원/건)
 - 마케팅 활동 지원 : 광고 및 홍보, 전시회 참가, 소비자 조사 등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지재권 출원
 - 인증 획득 지원 : SW, IT서비스, 전자기기 안정성 등 인증 취득

선정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 031-492-9901)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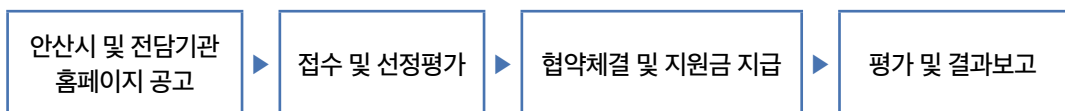
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연례반복)
- 사업비 : 265,960천원 (도 79,690 시 186,270)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뿌리기업 중 안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 사업목적 : 뿌리기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구분	추진과제	지원한도	기업부담
시제품(금형) 제작	·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20,000천원	총 비용의 20~25% 이상
시험분석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지원	1,000천원	
인증획득	공급자품질인증 · IATF 16949(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 · SQ(현대 · 기아차 Supplier Quality 인증)	10,000천원	
	시스템인증 · ISO45001(안전보건), ISO14001(환경경영), KS인증	4,000천원	
	전문기업인증 ·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3,000천원	
디지털 제조혁신	·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자동화 설비, 제조 공정 로봇 등 도입 지원	50,000천원	
노후생산설비 및 장비 개선	· 뿌리기술공정 및 생산 등에 필요한 노후설비 및 장비(부품)에 대한 개선 지원	20,000천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개선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용 지원	10,000천원	
마케팅	· 홈페이지 제작, CI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3,000천원	

지원내용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팀 (☎ 031-500-3035)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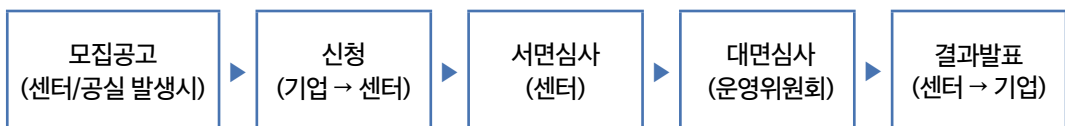
개요

- 위치 : 단원구 연수원로 104-14 (원곡동)
- 운영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 규모 : 건물 2,177㎡(지상3층) / 대지 4,152㎡
- 입주공간 : 21개실 / 1,657㎡(42㎡~155㎡) ※ 공용면적 포함
- 사 용 료 : 보증금 ㎡당 30,000원 / 사용료 ㎡당 20,000원 내외(1년)
- 주요기능
 - 안산시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보육 지원 등

입주요건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3년(심사를 통해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주대상 :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입주요건
 - 신청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 소재지를 입주 3개월 내 센터 주소지로 등록必

입주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 031-492-9936)

청정공정 확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12.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 사업주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사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안산시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내용
 - 중소사업장 청정 생산공정 정밀 진단·지도 및 개선 유도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 원료-생산-사용-폐기 쉼단계에서 자원·에너지사용 및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등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분야별 전문가 청정생산공정 진단 컨설팅
 - 자원재활용 등을 통한 폐기물 절감, 단열 폐열회수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청정공정으로의 개선 유도 기술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031-481-289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02-2183-153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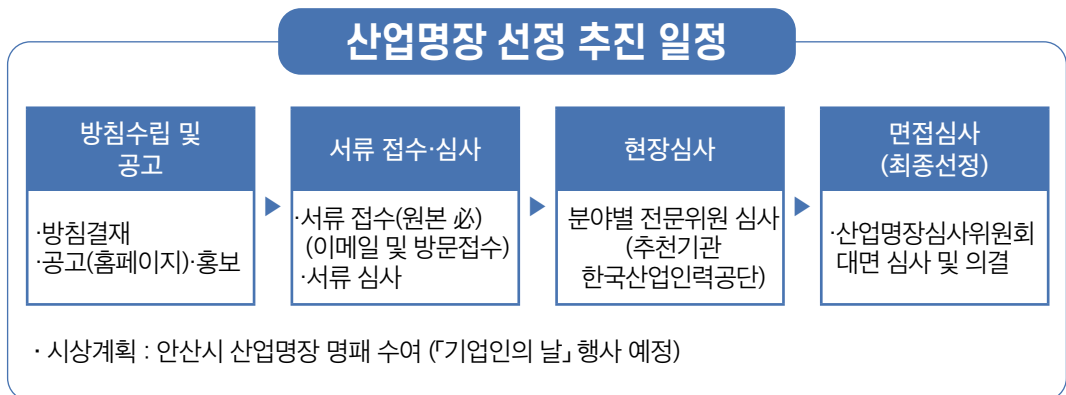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선정인원 : 3명 이내
- 선정분야 : 기계설계 등 39개 분야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면접 및 최종심사
- 선정방법 : 산업명장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지원내용
 - 안산시 산업명장 증서 및 명패 수여
 - 기술장려금 지급(개인당 1,200만원 /3년간 400만원씩 지급)

➡ 지원내용

- 안산시 산업명장 증서 및 명패 수여
 - 기술장려금 지원(1인 / 1,200만원 (*지급방식: 연 400만원 / 3년간)
 -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 참여 지원
 - 안산시 산업 및 관련 행사 진행시 초청 예우(대한민국명장 동일 적용)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행정팀 (☎ 031-481-2857)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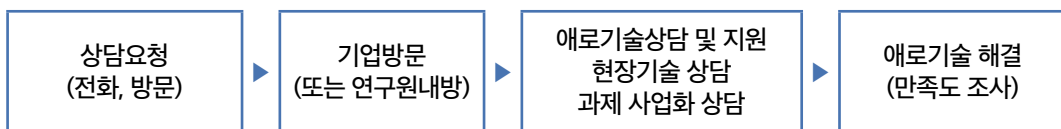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연례반복)
- 사업비 : 250,000천원 (도 100,000 시 150,000)
- 지원대상 : 관내 섬유기업 및 관련 기업
- 사업목적 : 다양한 기술개발 요구에 대한 대응 및 개발 역량 강화로 안산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V	방문상담 (Visiting)	· 안산분원 상주인력의 근접지원 · 기업방문 및 내방을 통한 기술상담
I	섬유기업 애로사항 진단 (Inspection)	· 기업별 현황 및 요구사항 등 파악, 애로사항 발굴 및 DB화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매칭
S	맞춤형 기업지원 (Supporting)	· 각 분야 전문위원의 맞춤형 기술지도 · 시험 분석 및 패키지 분석 지원, Pilot test 지원
A	기업역량 강화 (Advancement)	· 기업의 R&D 사업 연계 지원 - 기술개발 과제발굴 기술수요조사(RFP)작성지원 - 연구원 인력 풀을 통한 연계지원 - 중앙정부 및 경기도 R&D 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팀 (☎ 031-500-3099)

PART

4

첨단 제조 및 로봇기술 혁신 지원

- 스마트 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
-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 미래혁신기술 제품화 지원
-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 운영

스마트 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



개 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총사업비 : 973백만원

지원내용

구 분	지원규모	비고
① '기초' 단계 설비&솔루션 구축지원 - (설비)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산업용 로봇 등 - (솔루션) 제품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70%)	
② 스마트공장 전문 컨설팅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진행 관리) 도입·공급 간 의견 조율, 현장애로 해결지원, 구축 일정 및 과제 진행 관리 등 - (검수 및 보고서 작성 지원) 도입물품 검수, 완료보고서 검토 등	3백만원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로봇산업팀 (☎ 031-481-2860)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655)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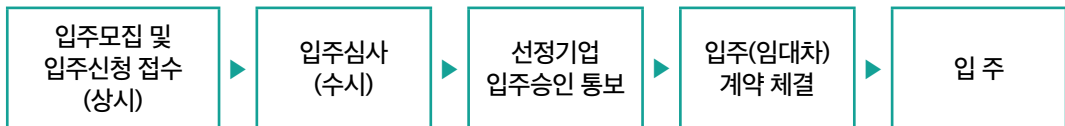
- 위 치 : 상록구 해양3로 17 (사동)
- 운영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규 모 : 연면적 16,529㎡(지하4층/지상11층)
- 입주공간 : 24개실 / 총 6,696㎡
※ 계약면적 기준(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포함)
- 사 용 료
 - 입주보증금 : 월 임대료의 12개월 분 / 월 임대료(VAT 별도) : 21,000원(3.3㎡)
- 주요기능
 - 소부장 전문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스마트데모공장 운영
 -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 입주공간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 등



입주요건

- 입주기간 : 입주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심사를 통해 2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10년 입주 가능)
- 입주업종 : 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사업
※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공장등록 불가
- 입주우대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최대 9개월 임대료 무료 지원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확인하기 : <https://www.smart-factory.kr/>

입주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로봇산업팀 (☎ 031-481-3517)
경기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 031-505-9117)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조성사업
- 구축위치 : 디지털전환허브(사동 1639-21) 1~5층
- 주최/전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참여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비구축 및 활용, 기술자문),
(재)경기테크노파크(인력양성 프로그램, 성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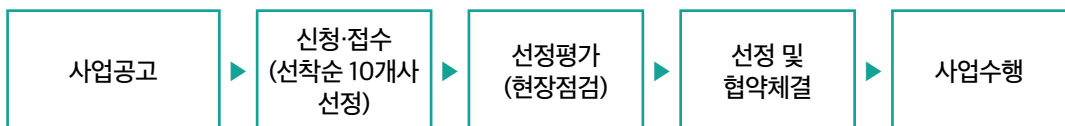
사업내용

구분	추진과제
IVDX 인프라 구축	· 지능형 산업 밸류체인 협업 플랫폼 구축 · 소재·부품의 품질 예측을 위한 AI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정/공법 설계·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 제조 전주기 디지털 전환 시험·검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라인 구축 · 작업자 디지털 전환 지원 스킬업(Skill-up)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	· 혁신제품 생산을 위한 가상 밸류체인 구성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데이터 기반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제조기술 상호운용성 시험·인증·평가 지원
공급산업 육성 및 스킬업	· 데이터기반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공급산업 육성 지원 · 스킬업 인프라를 통한 작업자의 디지털 전환 지원
IVDX 지원 센터 구축	· 시생산 장비 설치를 위한 환경조성 및 인프라 구축 ※ 디지털전환허브 지상 1층 ~ 5층 활용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제조데이터 기반 디지털전환 실증	· 제조기업 보유 현장데이터 수집 및 조회 서비스 · 제조 현장 모니터링용 대시보드 서비스 · 제조현장 각종 문서를 대상으로 LLM 기반 질의 서비스 제공	기업 자부담 없음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로봇산업팀 (☎ 031-481-3517)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팀 (☎ 031-505-9119)

미래 혁신기술 제품화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9개사 과제 (20백만원/기업당)※ 10% 이상 기업자 부담, VAT별도(기업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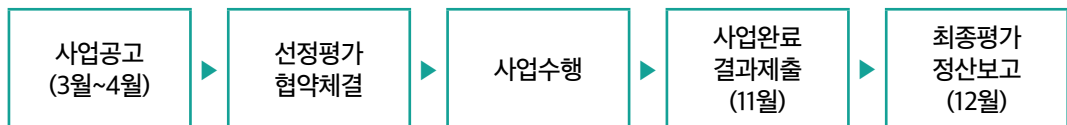
지원내용 :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존 제품에 혁신형 기술을 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부터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미래혁신기술

- ▶ **미래선도기술** : 지능형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혁신성장동력 관련 산업
- ▶ **미래유망기술** : 신체증강휴먼, 웰니스 맞춤형관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유망기술 관련 분야
- ▶ **4차산업혁명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드론 등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626)
경기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팀 (☎ 031-500-3035)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개요

- 사업명 :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 구축위치 : 경기테크노파크 플랜트2동, 디지털전환허브 10층·11층
- 주최/전담 : 산업통상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주관/참여 : 한양대학교 ERICA /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AI·로봇산업협회

사업내용

- 산업용 및 협동로봇 등 로봇활용 실증 테스트베드 실습장비 구축
-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현장실무형 전문4인력 양성

구분	사업내용
교육전용 공간구축	· 실제 공장 자동화 환경을 묘사한 교육장 구축 · 실습·이론교육을 한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설계 · 일반시민 대상 로봇 체험 공간 마련 상시 개방 · 총 5,439.4㎡(1,646.7평) 실습·이론 교육장 구축
교육장비 구축	· 제조공정 기반 교육 추진을 위해 다품종 장비 구축 · 서비스와 물류산업에 특화된 로봇 장비 구축 · 인공지능(로봇AI·SW) 융합로봇 교육 환경 구축 · 총 5종 199대 로봇장비 구축
교육개발 운영	· 교육분야 : 제조로봇/서비스로봇/자율주행로봇/로봇AI·SW · 교육 커리큘럼 34건, 교육인증 40건 개발 · 재직자, 일반인 대상 기초/심화/전문가 교육 진행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기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 기업재직자 대상 제조로봇 및 서비스로봇 등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무료
교육수료생 취업연계	· 수료생 취업 연계 기업 로봇공정 개선비용 지원 등	연간 6개사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로봇산업팀 (☎ 031-481-2860)
 한양대ERICA 로봇직업교육센터 (☎ 031-500-4511/400-4823)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 031-505-9114)

PART

5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해외 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지사화 사업
-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 안산e-스토어 운영
-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사업
-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경기TP)
-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 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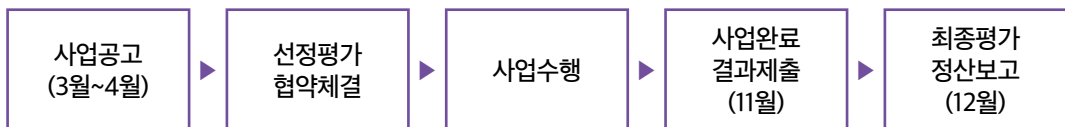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6. 2. ~ 12.
- 사업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사항 :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해외로 파견, 바이어와 사업 연계 및 수출상담을 지원함.
- 지원계획

추진시기	파견지역(예정)	파견규모	운영방법
계	2회	18개사	위탁추진
상반기	미주 / 대양주	8개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하반기	동남아	10개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내용

- 사기업별 수출 상담을 위한 현지 상담장 운영 등 제반사항 지원
- 항공료(일부), 전시회 부스비, 통역비, 임차료, 사전 간담회 등
- 상담품목 : 종합품목

➤ 지원절차



➤ 참고자료



현지 바이어와 MOU 체결 현장



해외 현지 상담장 운영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093)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공고일 이전 전시회 참가 건 포함)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2026년 국내 · 해외 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국내 전시회 : 13개사 내외(업체당 3,000천원 이내)
 - 해외 전시회 : 15개사 내외(업체당 8,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국내 :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비 등
- 해외 : 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비, 해상 운송비(편도), 1인 항공료(50%) 등
- 지급방식 : 해당 전시회 참가 후 지급 및 정산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093)

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공고일 이전 선정된 기업 포함)
- **사업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2026년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개 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의 참가비 지원(진입 · 발전 단계만 지원)
 - 진입 단계 : 사업 참가비 전액 지원 (70만원)
 - 발전 단계 : 사업 참가비의 6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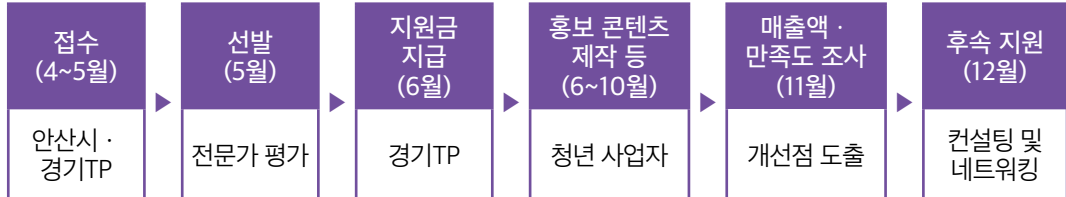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0개사
 - (자격) ▲19세~39세 ▲안산시 주민등록 내국인 ▲안산시 거소신고 외국인 ▲안산시 소재 사업자
 - (기준) 상품 경쟁력, 성장 가능성, 기업 경쟁력, 마케팅 역량 등 고려 정성평가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필수),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선택),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및 쇼핑검색 광고지원(선택), 택배배송비 지원(선택) 등
 - (1:1 맞춤 컨설팅) 사업자별 네이버 블로그 및 스마트스토어 운영 진단 및 매출 향상 자문

● 지원절차



※ 상기 일정 및 사업추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선지급, 결과물 확인 후 정산

● 문의처

청년정책관 e-비즈니스팀 (☎ 031-369-178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 031-500-3017)

안산 e-스토어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우수기업 온라인 홍보관 입점 지원 및 할인쿠폰지원
- **모집기간** : 2026. 1. ~ 계속(상시접수)
- **모집대상**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자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직접 개발 · 제조 또는 OEM 생산 기업)으로 단순 유통 · 수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미취급 품목 판매 기업 제외
- **사업내용** : 안산e스토어 <https://www.ansanestore.com>



- ▶ **(입점지원)** 안산 e-스토어 제품 입점 등록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연동
(상품 상세 정보 · 결제 · 사용자 리뷰 노출 등)
- ▶ **(기업홍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미운영 기업 홍보를 위해 기업 홈페이지 연결
- ▶ **(할인쿠폰지원)** 50개 기업 선발, 기업별 최대 10만원 할인쿠폰 비용 지원
 - ※ **(자격)**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안산e스토어 입점 필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급 '빅파워' 이하(최근 3개월 판매건수 2,000건 미만이며, 판매금액 6억원 미만)
 - ※ **(기준)** ▲상품 경쟁력 ▲홍보 콘텐츠 완성도 ▲지원 효과성 등 고려 정성평가

● 지원절차(연중 상시 모집)



※ 상기 일정 및 사업추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청년정책관 e-비즈니스팀 (☎ 031-369-178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 031-500-3017)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각종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 입찰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안산시 관내 기업
- **사업비** : 27,000천원 (시 18,000천원, 자부담 9,000천원)
- **운영기관** : 안산상공회의소
- **주요내용** :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전자입찰 실무교육, 1:1 컨설팅

지원내용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전자입찰 실무교육	전자입찰 1:1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 (조달청 외 2,500여 개 기관) • 낙찰 사정을 및 예가 분석 • 콜센터 운영	• 2026 상반기 중 1회 • 조달등록 업체 및 신규 업체 •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활용 및 입찰 관련 지식 교육 등	• 2026. 3. ~ 11. • 관내 기업 15개 사 • 기업실적, 투찰성향 분석, 투찰전략 수립 등
• 회원가입 및 이용승인 후 맞춤형 입찰, 낙찰 정보 제공	• 홍보기간 : 1 ~ 4월 • 접수기간 : 4월 ~ 6월 중 • 대상인원 : 선착순 100명 • 교육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 모집공고 : 1월 중 • 접수기간 : 2월 중 • 선정규모 : 15개사 • 지원방법 : 격월로 1:1컨설팅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624)
 안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 070-4571-5860)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경기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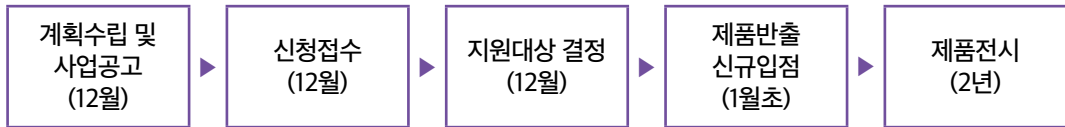


개 요

- 설치장소 : (재)경기테크노파크 1층 로비 (상록구 해안로 705, 사동)
- 대 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제품
- 전시비용 : 무료
- 전시규모 : 8개 전시부스
- 전시부스규격(가로 x 세로 x 높이) : 70cm x 50cm x 90cm

제품전시기간 : 2026. 1. ~ 2027. 12.

추진절차



※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841)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 요

- 장 소 : 안산세관
- 대 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 소요비용 : 전 액 무료
- 내 용 : 수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부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출입전문 상담센터 운영
 - ▶ 세관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 활용(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통관, 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제공
 - ▶ 운영방법 : 1차 유선 상담 후 방문 컨설팅, 필요시 공익관세사 동행
[문의처]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 031-8085-3872
- 공익관세사 무료 컨설팅 지원
 -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FTA·통관·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제공
 - ▶ 운영방법 : 수출입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 및 기업 방문 컨설팅
[문의처]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 031-8085-3872
- YES FTA 전문교육
 - ▶ 중소기업 실무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관리인력 양성
 - ▶ 운영방법 : 교육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이고 전액 무료로 운영
※ 자세한 교육과정은 홈페이지(<http://www.ftaedu.or.kr>) 참조
[문의처] FTA 원산지아카데미 고객센터 ☎ 1544-5702
- 보세공장 제도 안내
 -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
 - ▶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및 국내산업 진흥목적으로 도입
※ 보세공장은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거나,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한 제도
[문의처]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 031-8085-3871

· 수출기업 관세 환급 프로그램

- ▶ 수출기업이 수출제품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부가세 제외)이나 중소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일정상품을 수출할 경우 일정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
 - ▶ 지원대상 : 수출기업
 - ▶ 환급신청기간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 [문의처]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 031-8085-3824

·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 ▶ 기업의 수출입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신고가격, 품목분류, 감면 등)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 운영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상시 조회 가능
※ Uni-Pass 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납세신고 도움정보 조회
 - ▶ 제공내용 : 세관에 신고·신청한 현황, 납세 유의사항, 절세 Tip 등 안내
- [문의처]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 031-8085-3820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지원 제도

- ▶ 외국 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지원
 - ▶ 지원대상 :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 ▶ 제공내용 : 납부세액·세액정정·과태료 등에 최대 1년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 [문의처]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 031-8085-3823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
 - ▶ 대상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문의처]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 031-8085-3823

PART

6

기업환경 개선 지원

- 기업SOS넷 운영(기업애로 해소)
-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 ‘환경경영포인트제’ 추진

기업 SOS넷 운영 (기업애로 해소)



▶ 사업개요

- 접속주소 : www.giupsos.or.kr
- 가입대상 : 기업 및 경제단체의 임직원
 - 기 업 체 : 기업 및 경제단체의 임직원
 - 경제단체 : 회장, 총무, 단체회원 등
- 지원규모 : 4개 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업애로 접수 및 해소, 기업 지원사업 안내
-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 안산시 구인 · 구직 홍보

▶ 기업애로 처리절차



▶ 기업애로 해소 유관기관

-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031-410-3030(내선11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센터 432-2400)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입주지원팀 070-8895-7539)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500-3084)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624)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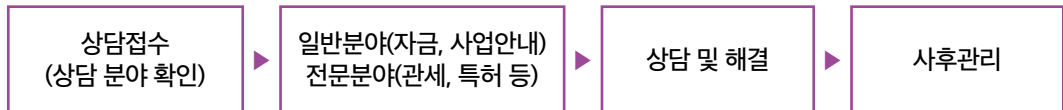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연례반복)
- 사업비 : 300,000천원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 사업위치 : 상록구 해안로 705, 3동 5층(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 일반분야(자금, 지원사업 안내 등)
 - 센터 전문위원 3명(상주)
- 전문분야(특허, 수출, 관세, 인증 등)
 - 전문인력 pool 구축, 기업 요청 사항에 따라 현장 방문 후 상담 및 해결(비상주)

➤ 운영절차



➤ 홍보사진



상주위원 전문상담



현장 방문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혁신팀 (☎ 031-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팀 (☎ 031-500-3099)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 (☎ 031-500-4565,4566)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기업
- 지원규모 : 14명
- 소요예산 : 42,000천원(도비 12,600천원, 시비 29,400천원)

➤ 지원내용

- 기업별 2~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 및 보증금 · 관리비는 사업주(기업) 부담
- 적용대상 :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제외
- 외국인 노동자(기업당 1명) 가능

➤ 지원절차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093)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방식** : 전철역 연계 산업단지 내 출퇴근 셔틀버스 방식
 - 7개 역(안산역, 원시역, 시우역, 초지역, 상록수역, 오이도역, 정왕역)
- **운영내용**

구 분	노 선	차량 대수	운행 횟수(일)	
안 산	5개	5대	10회	출근: 5회 퇴근: 5회

※ 운행횟수 증차 및 노선 개편 예정

- **이용요금** : 무료

● 노 선 도



- **운영시간 및 노선**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www.kicox.or.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버스’ 검색 ▶ 상단게시글 참고

●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본부 (☎ 070-8895-7566)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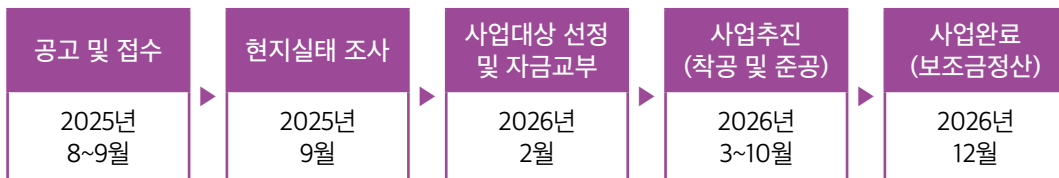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규모** : 약 29개 기업 ※ 지원 업체 수는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40%, 자부담 20%(사업별 차등 보조)

지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 한도	지 원 내 용
노동 복지	노동 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40백만원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지식 산업 센터	준공 후 7년 이상경과 된 지식산업센터	60백만원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 도 40%, 시군 40%, 기업 20% 이상
소 방 안 전	작업 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20백만원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소방 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50백만원 경보설비, 무선회재감지기,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선정절차



☞ **문 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 (☎ 031-481-2845)

☞ **관련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기반시설 정비

- 기업민원처리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보·차도, 가로등, 보안등)정비
- 기업체 민원사항(전화, 인터넷, 방문 등)우선 반영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도로정비 건의사항 반영
- 현장점검을 통한 노후 심화정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 선정

도로 재해(설해 및 수해) 예방 관리

-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및 우기철 도로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우선 작업 및 보도간선도로 병행 작업 실시
- 동절기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
 - 제설차량 : 15톤 트럭 6대(임차), 5톤 트럭 1대(임차), 1톤 트럭 1대(자차)
 - 제설자재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확보
- 우기철 도로 시설물 현장점검 및 상습 침수 지역 순찰 강화

협조사항

-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발생 예상지역 및 재해 위험지역 즉시 신고
- 우기·동절기 기업체별로 「내 공장 앞 빗물받이 청소 및 동절기 눈치우기」 협조



정비 전



정비 후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 (☎ 031-481-2095)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12.
- 사업비 : 106,000천원(도비 37,200천원, 시비 68,800천원)
- 사업량 : 20개소(시 모집공고 20개소)
- 지원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3~5종 중소기업 사업장
- 지원내용
 - 관리지원 : 전문인력 방문을 통한 방지시설 관리지원
 - 성능 및 오염도 검사 : 방지시설 유량, 가스 유출 등 측정, 오염도 검사
 - 유지보수 :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방지시설 핵심 소모품 교체(수리) 등 지원
- 지원한도(최대 6,200천원/업체당)

(단위 : 천원, 개소)

구분	업체당 지원한도	보조금 비율
관리지원	600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없음
성능검사	1,100	
유지보수	4,500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합계	6,200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031-481-2904)

‘환경경영포인트제’ 추진



● 환경경영포인트제란?

- 환경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 시설 개선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환경 관련법(대기·수질·악취) 위반시 과태료 등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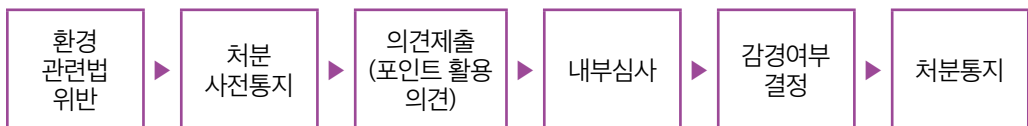
- 반월·시화국가산단 및 반월도금일반산단 지역의 안산시 산단환경과 관할 환경배출(대기·수질·악취) 사업장

● 포인트 적립 기준

- 시설개선, 오염예방 및 저감활동 등 과제별로 포인트 적립
- 1년간 최대 100점까지 포인트 적립

● 포인트 활용 방안

-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환경관련법(대기·수질·악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처분 요청할 경우 처분 기준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 근거로 검토 활용
- ※ 최근 3년간의 적립포인트 기준, 고의성 및 타법 관련 감경 불가할 경우 미적용
- 감경처리절차



● 포인트 적립신청 방법

- 연중 ‘환경경영포인트’ 참여 사업장 신청서 제출
- 3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확인서 발급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환경관리팀 (☎ 031-481-2907)

PART

7

기업민원 처리

- ONE-STOP 공장설립(등록) 민원 처리
- 건축 인 ·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및 민원 처리
- 공장등록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

ONE-STOP 공장설립(등록) 민원 처리



개 요

- 공장설립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업체에 일대일 ONE-STOP 민원처리
- 사업기간 : 연 중
- 대상지역 : 팔곡일반산업단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입지
- 대상업무 : 공장등록 관련 모든 민원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500㎡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 등
 - ▶ 제조시설설치 승인 : 기존공장에 500㎡이상 제조시설 설치 승인 등
 - ▶ 대상지역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 대상지역 안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변경) 신청 등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산업단지 입주업체,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의 완료신고
 - ▶ 공장등록및등록변경 : 500㎡미만 공장의 등록 및 등록공장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 처분신고(처분신청) :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신청)
 - ▶ 임대신고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 신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리(설립·등록 등)

- 반월 · 시화국가산업단지 : ☎ 070-8895-7599

[MTV 국가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시화MTV사무소 관리(설립·등록 등)

- 멀티테크노밸리(MTV) : ☎ 070-8895-7542~3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 (☎ 031-481-2845)

건축 인 ·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 건축 허가·신고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처리절차

- 접 수 : 세움터(www.eais.go.kr) 전자접수
- 서류확인 검토 : 관계법령 적합여부 협의 및 서류검토
- 허가여부 결정 : 서류확인 검토 사항이 적정할 경우 허가처리
- 결 과 알 림 : 허가조건 및 허가에 따른 수수료 고지
- 허가/신고 필증 교부 : 방문시 교부



- 수 수 료 :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구비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1부

- 수 수 료 :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 (☎ 031-481-2092)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및 민원 처리



도로점용허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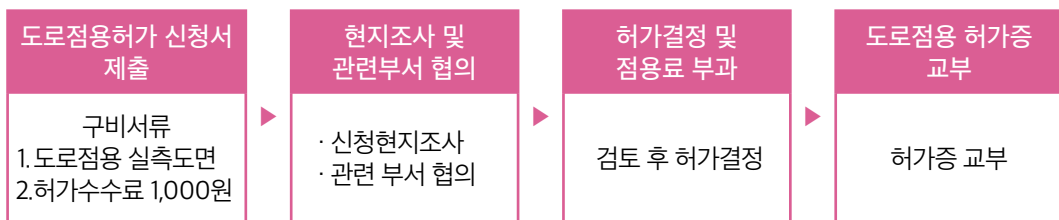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 허가대상 : 도로상에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 전주·전선·송전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어스양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처리절차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 (☎ 031-481-2096)

공장등록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 온 라 인 발급 : 정부24를 통한 신청 → 신청인 온라인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기업지원과 방문 신청 → 공장등록 여부 확인 후 즉시 발급 (수수료 1,000원)
- 구비서류(오프라인) : [대표자 신청] 신분증
[대리인(직원) 신청] 위임자 · 피위임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또는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 신청 시 : 신분증
 - 타인 신청 시 :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위임장, 이해관계서류
- 수 수 료 : 400원(관내 및 타 시·군 동일), 500원(이해관계인)

●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 구비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신청 발급만 가능
 - ▶ 본인 신청 시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재외국민 : 여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발급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 민원 창구에서 방문자가 작성하는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 수 료 : 인감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단원구청 1층 농협365코너 내)

- 운영시간 : 07:00 ~ 22:00 (365일)
- 발급서류 :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 기타 무인민원발급 창구 : 안산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고대병원, 원곡동 라성상가 등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481-2093

PART

8

일자리 지원

- 안산시일자리센터 운영
- 대규모 채용박람회
(안산스마트허브 / 안산919취업광장) 운영
-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운영

안산시일자리센터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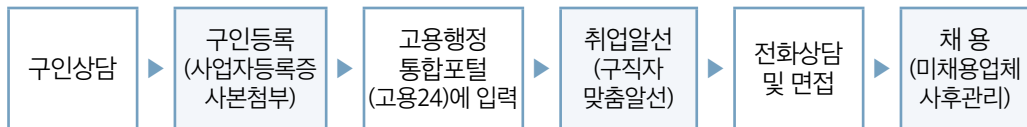
- 위 치 :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일자리센터
- 상담인원 : 6명
- 주요업무
 - 구인신청, 알선 및 인재정보 제공
 - 구직신청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채용정보 제공
 -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제공
(www.iansan.net → 분야별정보 → 경제/일자리 → 취업정보, 안산시일자리센터)
 - 안산 및 인근지역 소재 기업의 최근 채용정보 제공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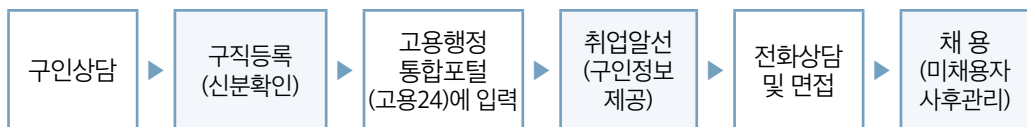
- 구인·구직 알선,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절차

(1) 구인업체



(2) 구 직 자



홍보사진



일자리센터 외부 전경

바로가기
(안산시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내부 상담실

문의처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 031-481-2882/2278)

대규모 채용박람회(안산스마트허브 · 안산919취업광장) 운영



개 요

- 일 시 : 연 4회
- 운영방법 : 대규모 대면 현장면접(업체별 면접부스 설치)
- 규 모
 - 구인업체 : 20 ~ 40개 기업(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및 인근 지역 기업체)
 - 구 직 자 : 300 ~ 800여명 이상

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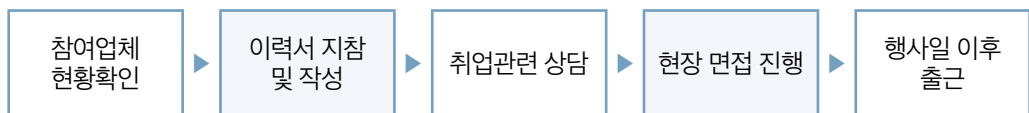
- 구인·구직자 현장 면접에 의한 채용
- 구직자 이력서 작성 후 희망 구인업체 현장면접 진행
- 유관기관 및 체험부스, 취업상담 부스 별도 운영

지원절차

(1) 구인업체



(2) 구 직 자



홍보사진



2025년 안산 스마트허브 / 919취업광장 행사운영

문의처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 031-481-2882/2278)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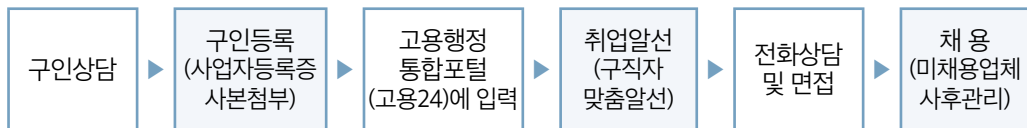
- 목적 : 일자리 지원의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민 취업 지원
- 운영장소 :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인력 : 전문 직업상담사 25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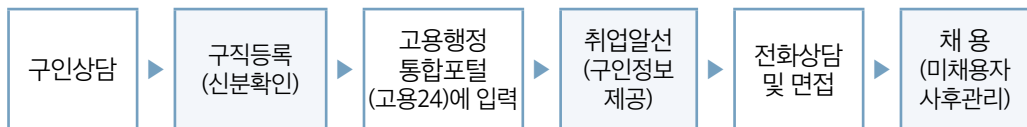
- 우리 동네 구인·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 상설 면접 및 동행면접 운영
- 기타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관련 각종 상담 및 안내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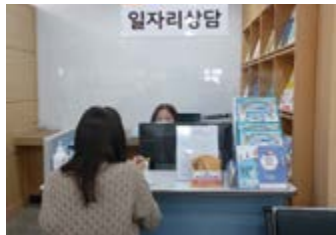
(1) 구인업체



(2) 구 직 자



홍보사진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창구

문의처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 031-481-2882/2278)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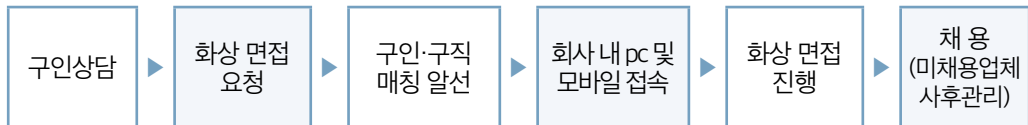
- 목 적 :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구인·구직자 대상 비대면 화상 면접 취업지원시스템 상설화 구축으로 고용시장 활성화
- 운영장소 : 시청 제2별관동 화상면접장
- 내 용 : 구인·구직 비대면 화상면접 상시 운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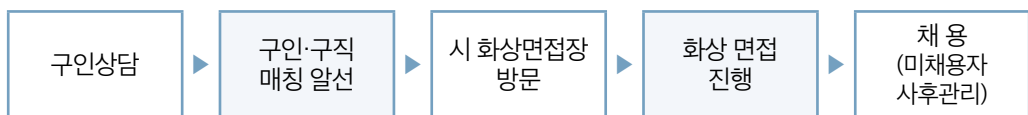
- 기업체 면접 준비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
- 맞춤형 인재 추천으로 구인 충족
- 기업체 내 PC 및 모바일 접속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면접 진행

지원절차

(1) 구인업체



(2) 구 직 자



홍보사진



화상면접장

문의처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 ☎ 031-481-2882/2278)

PART

9

기타 정보

- 도로 중앙선 절선 절차 안내
- 중소기업 확인 요령
-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요령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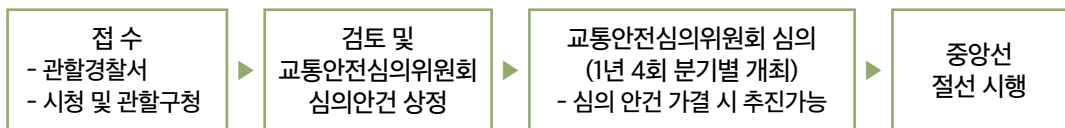
도로 중앙선 절선 절차 안내



● 심의개요

- 심 의 명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목적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 심의일정 : 1년 4회 분기별 개최
- 심의내용
 -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항
 -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 심의절차



● 문의처

안산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031-481-2596)
 상록구청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 031-481-5579)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 031-481-6295)

중소기업 확인 요령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서류

-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년 재무제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 ※ (개인기업) 최근 3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전년도 부가세 및 원천징 전자신고파일

➔ 발급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회원가입)
- **자료제출** -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원칙)
-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등은 지방중기청으로 해당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 **확인서 발급신청** - 메뉴 “중소기업 확인”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
- 신청기업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확인서 발급완료** - 제출서류 등을 기초로 중소기업 여부 자동판정
-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출

➔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문의처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문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031-201-6937/6938)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요령



➤ 대 상

·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인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시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별지 제16호 및 첨부서류 2부

➤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종류	규모	수수료(원)
13대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84,000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123,000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183,000
13대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67,000
5개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44,000
	나. 6기 미만	58,000
	다. 6기 이상	67,000
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 위반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 031-481-7521)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및 시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호	90 100	90 100	90 100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2호	90 100	90 100	90 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	90 100	90 100	90 1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4호	90 100	90 100	90 100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5호	90 100	90 100	90 1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6호	90 100	90 100	90 100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7호	60 70	60 70	60 70
아.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8호	150 200	150 200	150 200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9호	50	50	50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280 300	280 300	280 300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280 300	280 300	280 300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280 300	280 300	280 300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300	300	3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5호	500	500	500
거. 법 제4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0호	80	90	100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180	190	200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1호	40 50	40 50	40 50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대 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장

구비서류

-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 신청서 1부
 -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등
-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 신청서 1부
 - 폐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 및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등

과태료 부과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관련_별표 18)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1호	50 100	50 100	50 100
마.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 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2호	30	60	100
아.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3호	60	80	100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200	600	1,000
차.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2	500	700	1,000
타.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3	500	700	1,000
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4	500	700	1,000
하.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5	500	700	1,000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너.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00	600	1,000
러.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	60	80	100
버. 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1,000	1,000	1,000
여.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처.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커.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터.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300	500	1,000
퍼.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의2	50	70	100
허.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6호	60	80	100

● **과태료 부과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 관련_별표 15)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호의2	60	80	100
나.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200	200	20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200	200	200
마.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200	200	200
바. 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의2	200	200	200
사.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5호	100	150	200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2호	60	80	100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6호	120	160	200
타.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	60	80	100
파.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7호	60	80	100
하. 법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8호	200	200	2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	500	500	500
너.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2	500	500	500
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8호의2	100	150	200
러.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의2	100	100	100
머.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의3	100	100	100
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9호	100	150	200
서.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3	500	500	500
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3호	300	300	300
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 원인 분석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0호	100	150	200
처. 법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100	100	100
처의2. 법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4	300	400	500
처의3.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5	300	400	500
커.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4호	50	100	3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터.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6	200		500
퍼.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94조 제2항제5호	100		300
허.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4항제5호	5		5
고. 법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 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3호	300		500
노. 법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0호의2	100		200
도.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7	300		500
로.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1호	100		200
모.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조 제5항	2 1		
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6호	60	80	100
소.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4항제6호의2	60	80	100
오.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2호	100	150	200
조.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 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초. 법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3호	100	150	200
코. 법 제74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4호	100	150	200
토.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4호의2	100	150	200
포.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4호의3	100	150	200
호.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2호	200	300	(3차) 400 (4차 이상) 500
구. 법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2	100	100	100
누. 법 제7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2	60	80	100
두. 법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5호	100	150	200
루. 법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6호	100	150	200
무. 법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3	60	80	100
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60	80	100
수.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9호	60	80	100

비고: 위 표 모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신고내용

- 폐기물(사업장·지정·건설) 배출자 신고, 폐기물 실적보고 등

➡ 구비서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제8호 및 제12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기타 구비서류 → 문의처 연락)

➡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 폐기물(사업장·지정)배출자가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 실적보고서를 기한(익년 2월 말)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전자인계서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처리 법정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반월시화산단 외)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031-481-3531)
(반월시화산단 내)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 031-481-2847)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안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담대상 : 안산시민(외국인 포함), 관내 영세기업체
- 상담방법 :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상담장소 :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 지원내용

- 상담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10:00~12:00) * 1~4째주 수요일			변리사		
오후(14:00~16:00)	변호사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변호사
야간(19:00~21:00) * 1,3,5째주 화요일	-	변호사	-	-	-

- 상담비용 : 무료
- 상담내용 :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임대차, 기타 행정민원 등

➤ 참고자료

- 타기관 무료법률상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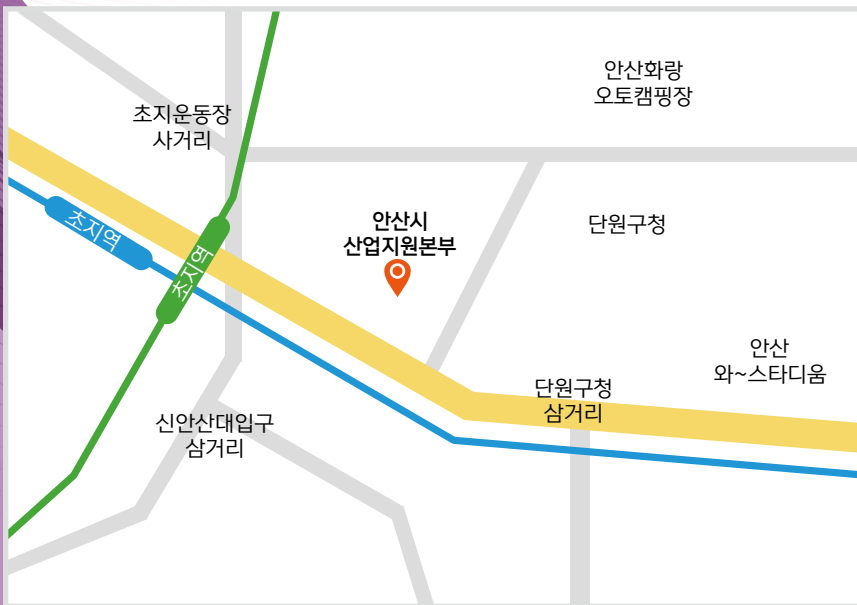
➤ 문의처

의정법무과 법무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 031-481-2699)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gyeonggi	☎ 031-201-6800
안산세관	www.customs.go.kr/main.do	☎ 031-8085-3835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공장설립 등)	www.kicox.or.kr	☎ 070-8895-7599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 1644-8000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1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www.kosmes.or.kr	☎ 1357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 1544-1120
경기신용보증재단(안산)	www.gcgf.or.kr	☎ 031-482-8402
안산상공회의소	ansancci.korcham.net	☎ 031-410-3030
경기테크노파크	www.gtp.or.kr	☎ 031-500-30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www.gbsa.or.kr/	☎ 031-432-2400
한국나노기술원	www.kancre.kr/main.do	☎ 031-546-6000
안산고용노동지청	www.moel.go.kr/ansan	☎ 031-412-199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http://womanbiz.modoo.at	☎ 031-211-0292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	-	☎ 031-500-4565,45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666-2)
Tel. 031-481-2841 Fax. 031-481-2686